

檢 討 報 告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 소관〉

日 時 : 2009. 9 . 7(월) 10:00

行政建設委員會

專門委員 명 금 길

[검토보고]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동 폐지조례안은 종전의 호적에 관한 사무는 구. 시. 읍. 면의 장이 이를 관장하는 자치사무로 되어 있었으나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관계 상위법령인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8. 1. 1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가사무로서 대법원이 그 사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대체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으므로 호적 법령에 근거한 호적과태료 관련 조례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기 위해 제출된 것임

< 주요내용 >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 1. 1부로 법률 제8435호로 공포 되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부과 징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4조(과태료부과징수)와 같은 법 대법원 규칙 제50조 (과태료부과) 및 별표3에 따라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되므로서 기존 「서울특별시 마포구 호적과태료부과 징수조례」는 폐지하고자 함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마포구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2008년 1월 1일자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되었고 대법원 규칙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2009.7.1자로 각각 공포. 시행됨에 따라 호적과태료의 부과 대상, 부과주체, 부과징수, 부과기준, 부과절차 및 이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 및 대법원 규칙으로 규정하였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새로이 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대법원 규칙과 이미 폐지된 호적법상의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제정되었던 본 조례의 폐지로 인한 호적과태료의 부과징수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